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규통계 작성시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 추가〉

■ 최보윤의원 · 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 승인사항에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 추가 등 (안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훈·서미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5.

다.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II. 검토의견

1.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 승인사항에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 추가 등 (안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 승인사항 -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u>성별 구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계책임관의 사무 -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u>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u> 등에 관한 사무	○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 승인사항 -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u>성별 구분 및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계책임관의 사무 -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u>성별 및 장애인 해당 여부 통계 작성 및 보급</u> 등에 관한 사무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¹⁾

1)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

현행법에 따라 통계법 시행령은 통계작성기관이 신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등에 통계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 승인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통계작성기관²⁾의 신규 통계작성 시 통계청장 승인사항에 조사사항의 장애인 구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계책임관³⁾의 사무에 장애인 구분 통계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모든 통계에 대해서 장애인 분리 통계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모집단 확보 및 표본설계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가 다수 존재하여 장애인 분리 통계의 의무화 필요성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자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하며, 2024년말 기준 총 436개 통계작성기관이 총 1,35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임. 개정안에 따라 각종 분야의 장애인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되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성별 구분과는 달리 장애인이 구분된 모집단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규모가 매우 달라 표본설계에 반영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통계 작성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모든 통계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까지 장애인 구분을 의무화할 경우 민감정보인 장애 여부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4)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7.5만명이며, 2023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263.3만명임.(자료: KOSIS)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략)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u>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u>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생략) ② (생략)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u>성별구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성별 및 장애인 해당 여부</u>로----- ---<u>통계</u>-----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 ----- ----- ----- -----<u>성별구분 및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1

참고

장애 관련 국가통계 작성 현황(자료: 기획재정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법령에 따라 보건, 복지, 노동, 기업경영 분야의 장애 관련 통계 작성 중

구분	통계명	작성기관(주)	작성 방법	작성 주기	작성 단위
1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고용노동부	보고	1년	기업체
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1년	가구
3	국방통계	국방부	보고	1년	기타
4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1년	개인
5	장애인건강보건통계	보건복지부	가공	1년	개인
6	장애인학대현황		보고	1년	개인
7	장애인현황		보고	1년	개인
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조사	3년	사업체
9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조사	1년	가구
10	정신건강실태조사		조사	5년	개인
11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조사	5년	기타
12	장애인실태조사		조사	3년	개인
13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가공	1년	기업체
14	인구총조사**		가공	1년	가구
15	국민연금통계	국민연금공단	보고	월	개인
16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1년	가구
1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조사	반기	개인
18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조사	1년	기업체
19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공	1년	개인
20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1년	가구
21	장애인삶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1년	개인

* 여주시복지실태조사 등 지역단위 지자체 작성 통계 30종 제외

** '23년 등록센서스,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장애인 등 공표